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1. 18 선고 2015가단5169640 판결 [보증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

피고A

변론 종결2015. 11. 4.

판결 선고2015. 11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6,000,0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최성보

별지